#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86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김승수·김위상·김예지

김은혜 · 엄태영 · 성일종

안철수 · 이인선 · 김정재

박성훈 · 조승환 · 권성동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현행 면적과 가격 기준은 불 가피하게 대형 평형 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140㎡ 이하로 높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6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규모"를 "규모[다만,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14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6억원"을 각각 "6억2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개 정 아 행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③ (생략) (현행과 같음)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 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가족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 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 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 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의 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戶) 또는 1세대당 140제곱미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 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 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 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 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 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

<u>터]</u>
⑤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 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 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 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 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 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 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 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 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

<u>6억2천만원</u>

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 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 3. (생략)
-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 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 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 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 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 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 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

1. ~ 3. (현행과 같음)
4
<u>6</u> 억2천만원-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 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 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 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 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 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5. (생략)

⑥ ~ ①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⑥ ~ ⑪ (현행과 같음)